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공하였던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27년으로 2년 연장(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 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 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 (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 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u>202</u> <u>5년 12월 31일</u> 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 ----- ----- ----- ----- ----- ----- ----- ----- -----.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 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u>2</u> <u>025년 12월 31일</u> 까지 한국거 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7. ----- ----- <u>20</u> <u>27년 12월 31일</u> -----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26